##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58

발의연월일: 2022. 12. 9.

발 의 자 : 김상훈·강기윤·김도읍

김미애 · 김승수 · 김예지

류성걸・이종배・조수진

홍석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 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 를 효율적으로 파악・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에 제2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
스템 운영) ① (생 략)	스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
	<u>기업 관련 법인·단체가 운영</u>
	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증
	에 관한 정보를 연계·통합하
	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u>③</u>
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	
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u>제1항 및 제2항</u>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u>&lt;신 설&gt;</u>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 단체에
	제2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u>한다.</u>
③ (생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